

일반논문

협오가 된 ‘충분한 근거가 있는’ 불안: 난민과 여성의 공포 인정 논의를 중심으로

오혜민*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18년 예멘 난민의 등장과 함께 공론화된 성범죄의 불안에 주목한다. 이 불안이 특정 집단과 부착, 분리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효과와 소거된 논의를 추적한다. 수적 팽창, 이동, 전염의 서사로 난민이 묘사되는 과정에서 한국은 과거와 현재, 섬과 육지라는 시공간을 가로지르며, 외부자를 환대하는 인권 국가이자 외부자에 의한 위협이 펼쳐질 장으로 그려졌다. 불안의 수신자로 여성이 호출되면서 한국은 임시 체류허가 조치의 정당성을 얻고 인도적 국가의 지위를 유지한다. ‘가짜’, ‘진짜’ 난민의 검증 서사가 호출해낸 ‘국민’은 이제 불안의 합리성을 검증하는 다수의 일상적 통제를 발휘하기 시작한다. 난민 논의에서 비합리적 공포를 유포한다고 지적된 여성 집단은 성폭력 논의에서 공포의 증명을 요구받는다.

주제어: 난민, 협오, 불안, 성폭력, 국가

*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강사(ohhyemin@hotmail.com)

© 2019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1. 시작하며

본 연구는 2018년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들의 등장 소식과 함께 공론화된 성범죄에 대한 불안에 주목한다. ‘난민 혐오’ 또는 ‘난민 수용’의 논의 안에서 이 불안이 특정 집단과 부착, 분리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성범죄 관련 안전과 국가의 역할까지 그 논의를 확장해 보고자 한다.

2018년 5월경, 제주도에 예멘 출신 예비 난민 신청자들이 대거 입국했다는 소식이 전달되었다. 2015년 0명이었던 제주 입국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의 수는 2016년 7명, 2017년 42명에 이어 2018년 549명으로 증가했다.¹⁾ 이 수적 증가와 함께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 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법무부는 6월 1일부로 예멘의 제주도 무사증 입국허가 국가 지정 철회를 결정했다.²⁾ 그러나 이 조치에도 청와대 국민 계시관에는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 제도를 재검토하라는 주장이 담긴 청원이 등장, 높은 호응을 얻었다.³⁾

난민의 입국과 체류 허가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근거로 제시된 것은 난민에 의한 성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여타 혐오 발언들과 마찬가지로 난민 집단에 성범죄 가해자의 이미지가 부착되며 만들어진 이 불안을 뒷받침하는 뚜렷한 인과관계나 근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 주장은 이전부터 ‘개신교 우파’들에 의해 퍼져나갔던 이슬람포비아를 강화하기 위해 페미니즘의 주제들을 가져온 것에 가까웠다(김나미, 2018; Kim, 2016). 그러나 이 내용의 사실 여부보다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주장이 유통되며 수용된 양상에 있었다. ‘인육’, ‘장기 매매’ 등 이전

1) 『제주신보』, 2018.5.2; 『조선일보』, 2018.6.20, 2018.9.14.

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8e)

3) 2018년 6월 13일부터 7월 13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된 이 청원에 총 714,875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까지 이주민 집단에 부착되어 유포되었으나 이내 허무맹랑한 것으로 간주된 여타 루머들과 달리 성범죄와 관련된 주장들은 실재하는 위협으로 각인되며, 위협의 증가 가능성 역시 설득력을 가진 것으로 퍼져나갔다.⁴⁾ 2018년 '미투' 운동을 통해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사후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진단이 이 불안을 점점 증폭시켰다. '성폭력에 대한 불안'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였음에도, 이 불안은 특정 집단이 만들어낸 혐오 발언이라는 명명과 함께 일종의 비합리적 감정으로 치부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난민의 지위 및 국내 체류 인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 모두 이를 결정하는 국가의 실체와 권한을 이미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 것과는 달리, 성범죄에 대한 여성의 불안과 관련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마치 명확한 실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사실 이 각각의 논의에서 난민과 여성 집단은 같은 층위의 논의를 끌어낼 가능성을 가진 집단이었다. 난민 집단과 여성 집단 모두 각 주제에서 불안 요소들이 소거된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하며 구성된 집단이라는 점, 안전 확보의 목표를 두고 이른바 '보호'의 책임을 저야 할 국가가 부재 혹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했다. 그러나 성범죄 논의에서 난민 집단과 여성 집단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미지가 부착되고, 반대로 혐오 발언의 맥락에서 각 집단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가 부여되고 강조되는 과정에서 꼭 필요했던 논의의 필요성이 약화되었다. '치안'을 강조하며 난민을 배제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성범죄 위협을 혐오로 해석하며 '포용'할 것을 강조하는 주장이

4) 구글 트렌드와 네이버 데이터랩 모두에서 2018년 6월 26일 가장 많은 검색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된 '타하루시'는 난민반대청원 링크와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먼저 유포된 뒤에서야 기사화되기 시작했다. 아랍어로 '집단 괴롭힘'을 의미하는 '타하루시'라는 단어가 한국에서는 '강간 게임'으로 오역되며, 마치 이것이 아랍 고유의 놀이 문화인 것처럼 퍼져나갔다.

등장하는 동안 정작 불안 해소, 안전과 포용을 위한 국가의 기본 보장 조치와 역할에 대한 논의는 모두 힘을 잃게 되었으며, 특정 집단이 만들어낸 것으로 간주된 불안만 그 자리에 남았다.⁵⁾

본 연구는 난민과 여성 집단을 마치 대립하는 것으로 설정해나가는 과정이 오히려 각 집단을 이미 어떤 본질적인 속성을 가진 그룹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효과를 발휘하면서 이 집단을 구성하게 만든 불안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여기서는 이 문제의식을 토대로 불안, 혐오, 공포 등이 부착되며 특정 집단의 경계가 설정되는 과정과 집단의 경계를 만들어낸 정동들이 다시 소거되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불안’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나가는 방식 자체를 보다 면밀하게 짚어보는 이 과정이 2018년부터 난민과 여성 집단을 ‘집단’의 이름으로 호출하게 만든 가장 큰 정치적 필요가 된 ‘불안’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근본적으로 다시 고민하게 만드는 ‘공통’된 통찰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2. ‘관용’과 ‘혐오’의 대상이 된 타자

특정 집단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편견을 강화하는 현상을 지적하는 연구들은 이전부터 꾸준히 존재해왔다. 우선, 2018년 난민신청자의

5) 2018년 10월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 중 339명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가 나왔다. 그러나 34명은 단순 불인정으로, 85명은 보류로 결정되었으며, 난민 인정은 0명에 그쳤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1년 후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취업과 체류지 변경 신고를 조건으로 한 출도는 허용되나 ‘가족결합’과 ‘사회보장제도’에서는 제외된다(『BBC코리아』, 2018.10.17). 난민 인정의 수가 너무 낮다는 지적에 법무부는 2018년 말 언론인 출신 2명에 난민 지위를 부여했으나, 추가 인정은 없었다(『세계일보』, 2019.6.20).

유입과 관련하여 관용과 환대, 차이의 존중과 공존 등의 규범들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등장했다(권지윤, 2018; 김성진, 2018; 임종섭, 2018). 이 논문들은 난민을 타자와 위협으로 간주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배제와 차별을 멈추고 포용해야 할 것을 주문하거나(권지윤, 2018; 김성진, 2018), 다른 정파성을 가진 두 언론사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이 난민 이슈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지, 긍정적으로 묘사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비교 분석하며 공존의 태도로 난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시할 것을 주문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되었다(임종섭, 2018). 이 연구들은 문제 상황을 빠르게 포착하고 그 해결법을 제안했다는 의의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김희강이 지적한 대로 난민 보호의 규범성은 어떠한 논쟁도 있을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다. 난민 보호의 규범성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그 규범성의 복잡하고 논쟁적인 측면을 함께 볼 필요가 있었으며, 인권과 국가 주권, 박해와 문화 권리, 비자발적, 자발적 이주의 개념 자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져야만 했다(김희강, 2016).

난민 집단에 대한 관용과 환대를 결론으로 제시하며 마무리되는 연구들이 가진 한계는 난민 집단을 이미 하나의 동일한 형질을 가진 외부자로 묶어내고 타자의 위치를 배당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점에 있었다. 타자성과 차이를 기반으로 특정 집단을 규정하고 있는 이 전제는 사회적 분위기, 예산과 정책적 목표 등의 변화에 따라 때로는 관용의 방향으로, 그러나 또 다른 순간 정반대의 방향으로 발휘되며 차별의 기반으로 해석될 위험성을 갖고 있었다(오혜민, 2019). 이와 관련하여 웬디 브라운(Wendy Brown)은 이러한 관용 담론이 사회적 갈등을 상이한 정체성 사이의 마찰로 돌리며, 종교적, 종족적, 문화적 차이 그 자체가 갈등을 내재하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차이와 정체성의 자연화와 존재론화를 뒷받침하고 있는 이러한 관용 담론의 확산이 역으로 이러한 자연화, 본질화 과정을 촉진함으로써 그 차이를 재생산하며, 그 차이에 다시 종속적 위치를 재배치

한다는 사실을 은폐한다는 것이다(브라운, 2010).

여기서 대상이 되는 집단을 고정적인 것으로 부각하기보다 특정 집단을 규정하고 이를 다시 문제로 지시하는 타자화의 과정 자체와 그 원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살펴보자. 김보명은 세대, 인종, 계층, 국적, 장애,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차이의 범주들을 가로질러 작동하는 소수자의 다른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설명하기 위해 ‘위마드’ 등에서 등장하는 현상을 분석한다. 그리고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들이 교육과 노동, 소비의 기회를 누리지만 동시에 새로운 생애사적 부담과 취약성을 경험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손상된 자이를 회복하고자 타자들에 대한 배제와 적대를 실천한다고 설명한다. 타 집단에 대한 혐오가 삶의 위기를 경험하는 집단을 중심으로 조직되며 각 집단의 취약성을 개선할 요구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김보명, 2018). 이와 관련하여 지그문트 바우만(Zygmunt Bauman)은 외부자에 부과되는 낙인과 낙인을 통해 달성되는 정치적 효과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그는 이 ‘존재론적 불안정성’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주민들을 위험한 존재로 악마화하는 과정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특정 타자를 대상으로 특정한 영토에 대한 가시적이고 명백한 통제권을 확인하는 방식을 통해 ‘대처했다’는 안전하다는 느낌을 제공하면서 정치적 지배를 정당화한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바우만, 2008). 이와 비슷한 논지의 분석을 전개하고 있는 김나미의 연구는 ‘페모내셔널리즘’의 개념으로 페미니즘과 민족주의가 결합하는 방식을 소개하며, ‘예멘 난민수용거부’ 청원이 한국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성폭력과 성차별을 축소하고 지우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테러리스트로, 여성 인권 탄압자로, (성)폭행 위험인물로 무슬림 남성들을 낙인찍으면서 마치 한국을 배타적이지 않고, 성폭력이 없는 여성인권이 보장된 나라인 반면 예멘으로 대표되는 이슬람 국가들이 여성 인권과 안전의 저지대에 있는 ‘낙후된’ 나라라는 담론적 효과를 생산해낸다고 설명한다(김나미, 2018).

그렇다면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의 유입과 함께 불거진 불안은 어떤 과정을 거쳐 마치 특정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 만들어져 다수에게 전달되었는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안전 확보에 대한 요구들은 어떤 맥락과 과정을 거쳐 또다시 특정 집단의 발언이자 '혐오 발언'으로 규정되었는가? 마지막으로 그 과정에서 강조된 사항과 정당화되며 관철된 결과는 무엇이었으며, 사라진 논의들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 혐오 혹은 공포의 양상과 유포 과정을 추적해보며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본다. 우선,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1개 주요 일간지 기사 중 난민, 범죄, 한국 세 가지 키워드가 모두 포함된 기사 257건을⁶⁾ - 이 중 105건의 기사에서는 여성이라는 키워드도 등장한다 - 선정하여 살펴보았다.⁷⁾ 그리고 난민 집단을 상징하는 방식, 이 집단과 분리 혹은 대립하는 것으로 선택된 집단의 선정 방식과 서술 방식, 특히 불안과 혐오가 어떤 방식으로 묘사되고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내용을 분석했다. 이어 분석시기 전후의 관련 기사와 외신 보도, 통계자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관련 커뮤니티 온라인 게시물, 유튜브 등의 추가 자료들을 보충적으로 활용했다.

6) 한국언론진흥재단 Bigkinds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주요 일간지 11개(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에 실린 기사 257건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키워드로 검색된 기사 외에 분석 내용과 관련된 기사들을 추가로 활용했다. 참고로 전년도인 2017년 같은 키워드로 검색된 기사의 수는 58건이었다.

7) 기사 분석에서는 디트램 쇼이펠레(Dietram Scheufele)가 제시한 방법을 참고했다. 쇼이펠레는 Framing 개념을 토대로 미디어와 개인의 관계를 탐색하며, 미디어와 개인의 관계를 미디어와 수신자의 상호작용으로 해석한다. 개인의 경험,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매스미디어로부터 해석된 선택들이 현실을 구성한다고 보며, 프레임이 특정 가치, 사실, 요소 등을 강조, 길으로 보이는 것 외의 것들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프레임을 구성하고 정보를 배치하는 언론인,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과 타입 등의 요소에서 비롯된 습관, 정치 집단, 권위 이해 집단 등 외부적 영향을 고려하는 분석 도구를 소개한다(오혜민, 2019: 13; Scheufele, 1999).

3. 불안과 혐오가 그려낸 집단의 경계와 굴절된 전략들

1) 일부에서 집단이 된 개인의 형상

2018년 초, 평창 동계 올림픽 당시 난민은 ‘이주민’ 범주 내의 한 카테고리를 대표하는 것으로 재현되었다. 1월 14일 서울 지역 성화 봉송의 두 번째 주자로 유엔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소장과 결혼이주여성, 남성 유학생, 이주노동자 남성과 함께 난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16세의 소녀가 등장한다.⁸⁾ 난민 대표로 등장한 16세의 소녀,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부른 레인보우 합창단,⁹⁾ 외국인 200만 명 시대를 고려하며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겠다는 청와대의 개헌안 발표에 이르기까지¹⁰⁾ 2018년 초, 적극적으로 구성된 선량한 이주민의 표상은 인권, 희망 등을 제시하는 자리에 등장했다(전의령, 2015: 241). 그러나 이 난민의 형상은 불과 몇 달 후 무사증 제도를 이용하여 유입될 수 있는 추상적이고 위협적인, 알 수 없는 타자의 이미지로 변화한다.

5월 초, 예멘 출신 난민들의 유입과 그 수를 강조하며 특별한 사건으로 다룬 기사들이 등장한다(『서울신문』, 2018.5.3; 『제주신보』, 2018.5.2). 여기서는 같은 달 제주 입국 외국인 66,729명 중, 그리고 하루 평균 2,152명 중 76명에 불과한 예멘 출신 외국인의 입국이 특별한 사건으로 지목되었

8) 『동아일보』, 2018.1.14; 『동아일보』, 2018.1.15; 『연합뉴스』, 2018.1.12.

9) 『조선일보』, 2018.2.10.

10) 개헌안에서는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인권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 명 시대의 우리 사회의 모습을 고려해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다고 밝힌다. 그러나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의 주체는 현행처럼 ‘국민’으로 한정했다(『경향신문』, 2018.3.20).

다. 기존의 통계에서 기타로 분류되었던 이들의 출신 국가가 가시화되며 예멘인이라는 범주는 문제 집단으로 부각되었다.¹¹⁾

기사 표제부터 강조되며 기사화된 숫자는 점점 늘어났다. 5월 3일경, 76명, 78명 정도로 조망되었던 이 숫자는 며칠 후인 5월 9일에는 227명으로 불어났고, 6월 중순에는 500여 명으로, 6월 하순에는 다시 7737명으로 증가했다.¹²⁾ 입국자의 수, 누적 난민신청자 수 등의 '타국에서 자국으로' 이동한 행위자와 '자국에서의 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행위자의 범례를 오가며 마치 급격히 증가한 것처럼 보이도록 선택적으로 제시된 이 숫자는 '토끼처럼 번식하는' 이미지를 연상하게 했으며, '생물학적 평형'을 뒤흔드는 이주자 묘사의 형태를 보였다(Scott, 2007: 71).

6월 1일자로 무사증 입국허가 국가에서 예멘을 제외한 제주도의 결정과 함께¹³⁾ '수적 증가'를 강조하며 만들어진 또 다른 효과는 '예멘인'이라는 표상이 점차 한국의 난민 집단 전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상상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2018년 초까지의 한국의 난민 관련 기사들이 난민 신청자

1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8c), 「2018년 5월호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참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8a), 「2017년 난민관련통계(출입국향, 난민신청 현황 등)」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8b), 「2018년 4월호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를 비교했다.

12) 분석대상 기간 표제에서 숫자를 강조한 기사들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예멘 국적의 입국자들을 다룬 기사들이 있었으며(『제주신보』, 2018.5.2; 『제주의소리』, 2018.5.3; 『서울신문』, 2018.5.3), 예멘 출신 2018년 난민 신청 누적 건수를 다룬 기사(『연합뉴스』, 2018.5.9), 이어 예멘 출신 2018년 누적 입국자 수(『한겨레신문』, 2018.6.17; 『조선일보』, 2018.6.18)를 다룬 기사가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상반기 전체 난민 신청 수가 언급되었다(『조선일보』, 2018.6.23). 각 기사의 표제에서 소개된 숫자의 기준은 조금씩 달랐지만, 기사의 본문에서는 결과적으로 예멘 난민을 부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표제에서 등장한 '숫자'를 소개, 수적 증가의 이미지가 가져온 효과에 초점을 맞춘다.

13)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 출입국심사과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제주도에 준치한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관광객이 아닌 외국인들이 대거 제주도에 입국하는 상황"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히고 있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8e).

중 어린이 사진을 주로 활용했던 것과 달리,¹⁴⁾ 2018년 난민 관련 기사들은 관청 앞에 줄지어 기다리는 남성 집단의 사진으로 대체되는 양상을 띠었다(〈그림 1〉 참고).

〈그림 1〉 ‘난민 유입’ 기사 사진



자료: 『한국일보』, 2018.6.18; 『경향신문』, 2018.6.19.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표제 상의 숫자가 다시 축소된 것은 2018년 9월 중순이었다. 심사대상자 484명 중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 23명을 기사화한 기사들은 이 ‘인도적 체류 허가’가 난민협약과 난민법상의 5대 박해 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근거해 인정되는 난민 지위 획득과는 다른 성질의 것으로, 1년 기한에 한정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차원에서의 보호에 초점을 맞춘 판단이라는 점 역시 강조되었다.¹⁵⁾ 그리고 “면접과 면접 내용에 대한 사실 조

14) 배우 김혜수가 어린이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한겨레신문』, 2017.9.1),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린이의 얼굴 클로즈업 사진(『경향신문』, 2017.11.22), 혹은 임신 중인 아내를 한국에 두고 온 사연(『경향신문』, 2017.11.28), “차별에 눈물 짓는 난민 아동”의 사연 등을 전달하는 등(『중앙일보』, 2018.3.8), 어린이의 이미지가 주로 강조된다.

15) 『세계일보』, 2018.9.14; 『한겨레신문』, 2018.9.14; 『중앙일보』, 2018.9.14; 『경향신문』, 2018.9.14; 『한국일보』, 2018.9.14.

회, 테러 혐의 등에 대한 관계 기관 신원 검증, 마약 검사, 국내외 범죄 경력 조회” 등을 거쳐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자들을 상대로 위의 판단을 내렸으며(『한겨레신문』, 2018.9.14; 『경향신문』, 2018.9.14), “향후 국내 법 질서를 위반할 경우” 체류자격이 취소된다는 점도 설명한다(『중앙일보』, 2018.9.14; 『한국일보』, 2018.9.14). 이 기사들에서는 이전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난민 여성의 모습과 유아차를 끌고 있는 남성의 모습도 재현된다 (<그림 2> 참고).

<그림 2> ‘인도적 체류 허가’ 기사 사진



자료: 『중앙일보』, 2018.9.14; 『경향신문』, 2018.9.14.

500여 명에서 7737명에 이르기까지 증가했던 숫자 중 인도적인 이유로 승인된 23명에게만 한시적 ‘인도적 체류 허가’가 내려진 조치가 보여주는 수적 대비는 안전이 확인된 “선량한 이주민”이 집단 내에 제한적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며(전의령, 2015: 241), 이 역시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과 함께 주거권의 승인 권한이 어디에 귀속되어있는지를 다시 드러냈다. ‘절도 있는 행실’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이 방식은 한국을 질서 잡힌 곳으로 대비시키는 구도를 만들어내기도 했다(푸아, 2016a: 95). 한 기사는 이 23명이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는 난민 신청자의 인터뷰를 인용, “그동안 예멘인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하지만 제주도민들은 언제나 친절했다. 감사하며 살겠

다'고 말했다"는 이야기 역시 전달한다(『한국일보』, 2018.9.14).

검증 전 단계의 위험한 다수의 신체와 안전 검증이 끝난 신체가 한시적이고 인도적인 조치를 통해 다시 통제의 영역으로 배치되었다는 서사가 전파된 지 한 달여가 지난 10월 17일, 예멘 출신 신청자 458명 중 339명에 게도 역시 '인도적 체류 허가'가 추가로 내려졌다는 기사가 등장한다.¹⁶⁾ 이번에도 난민 지위 인정자는 0명이었다. 그리고 다시 증가한 숫자를 두고 '가짜' 난민과 '진짜' 난민을 가려내야 한다는 논쟁은 오히려 힘을 더했다.

2) 환대하는 국가가 '과거'와 '섬'에 배치한 낙후와 공포

난민을 환대할 것을 주장하는 논의에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대비되어 제시된다. “제주 4·3 사건 때 죽음을 피해 일본으로 건너간 제주도민, 일제강점기 중국에 망명했던 ‘정치 난민’ 조선인들”, “한국전쟁 당시와 그 이후 국제 원조” 등을 언급하거나, “유엔난민기구의 전신인 ‘윌크라’가 원래 한국전쟁의 난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제강점기 중국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꾸린 우리 선조들 역시 ‘정치 난민’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한때 난민을 대거 배출한 전쟁 국가”였다는 점을 망각하지 말자고 강조한다(『경향신문』, 2018.6.19; 『한국일보』, 2018.6.20; 『중앙일보』, 2018.6.20). 이른바, 난민 처지를 공통점으로 제시하고 과거의 한국과 지금의 다른 국가 상황을 병치시키면서 한국의 부채 의식을 강조하는 이 서사는 “지금의 한국은 외국의 원조와 도움, 손을 잡아준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난민 발생국이던 한국이 이제 난민 수용국”이자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만큼”, “국내총생산(GDP) 세계 12위인 지금”,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국제 사회에서 역할을 분담”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¹⁷⁾ 전의령은 “우리도 OO였다”¹⁸⁾ 답론에 우리가 이룩한 그 어떤 것

16) 『세계일보』, 2018.10.17, 2018.10.18; 『경향신문』, 2018.10.17; 『JTBC』, 2018.10.18.

으로서의 ‘코리아’라는 우월감이 작동하고 있으며, 이 온정주의를 통해 ‘코리안 드림’의 나르시시즘적 구도가 완성된다고 설명한다(전의령, 2015: 269). 지금의 한국과 과거의 한국을 대비되는 것으로 그려내는 이 방식은 현재 한국의 상상된 위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재의 난민 범주를 한국 밖에 존재하며, 한국으로 유입될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효과를 발휘한다.

한국의 현재적 위상을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의 유의미한 공간적 상상이 공포의 정동과 함께 등장한다. ‘섬’이라는 제주도의 공간적 특성은 고립된 공간이 주는 공포와 함께 섬에서 육지로 향하는 공간 이동의 상상과도 연결되었다. 진출 가능한 영역으로 본토를 섬과 분리하여 상징하는 이 방식은 고정된 장소 안에서의 체류도 다른 장소로의 이동도 점진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리적 상상력을 자극하며, 이후 상태가 악화할 것이라는 위기의 서사이자 위협의 전염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개되었다. 여기서 평화라는 표상이 공간에 부착된다. 2018년 8월 1일 방송된 추적 60분 “예멘 난민 한국에서 길을 잃다” 편은 제주도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제주도를 “치안이 잘 되어 있어”서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이자 “문도 안 걸어 잠그고 살던 지역”이었다는 내용과 “입도 준비를 하다가 중단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한다(『KBS』, 2018.8.1: 42분 2초~43분 40초).¹⁹⁾ 평화를 무너뜨리는 존재로 난민이 부각되면서, 4월 30일 이후 출도가 제한되어²⁰⁾ 제주에 체류 중인 500여 명의 예멘 난민은 제주도 언

17) 『경향신문』, 2018.6.19; 『중앙일보』, 2018.6.20; 『문화일보』, 2018.6.29; 『서울신문』, 2018.7.6.

18) 원문에서는 “우리도 이주노동자였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나, 여기서는 수정, 강조했다.

19) “평화의 섬” 수식어는 다른 기사에서도 등장한다(『세계일보』, 2018.1.29; 『중앙일보』, 2018.6.20).

20) 4월 30일 법무부에서 처리된 제주도 출도 제한 조치는 6월 초에야 언론에 공개되었다(『경향신문』, 2018.6.6). 4월 27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조치를 공개범위에서 제외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론에서는 현재 작동 중인 더 확실한 위협으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출도가 가능해진 예멘 난민은 미래의 위협인 것으로 구성된다. “가짜 난민으로 인해 제주에서 성범죄와 테러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이향 난민대책도민연대 사무국장의 인터뷰에서 등장하는 이 위협 서사는 제주도 내에서 발생한 범죄 가해자의 국적을 밝힌 통계에서 바로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 나지만,²¹⁾ 그럼에도 가짜 난민을 가려낼 인력을 충원하여 심사 기간을 단축해야 하며 경찰 단속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힘을 얻는다.²²⁾

9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확대된 권한은 출도와 제주 밖 구직 활동이었다. 제주도를 떠날 수 있게 된 예멘인들을 다룬 기사에서는 “이태원 올 수 있게 됐다”, “제주 외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길 의사”, “제주 밖 이동 가능”, “제주에서 육지로”, “대도시로 향하겠다는 예멘인들의 소식” 등의 표현을 통해 이동 가능성을 부각한다.²³⁾ 동시에 이 인도적 체류 허가 조치에 “국민과 동등한 사회복지 혜택은 제외”된다는 점과 함께, “체류지 변경 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도적 체류 허가자가 체류지를 변경할 때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는 점 역시 강조된다.²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 조치의 조건으로 범질서 준수를 제시했으며, 준법 교육 역시 이미 시행했다고 답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체류지 신고 제도와 더불어 멘토링 시스템을 통한 “우리 사회 적응, 정착”을 돕는 조치를 이어나가겠다는 포부 역시 밝힌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8d). 심사를 통해 안전한 외부인을, 교육을 통해 안전해질 외부인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히며 절차의 정당성을 얻고자 하는 시도였다(콜린스, 2009: 419).²⁵⁾

21) 『제주의소리』, 2018.6.20; 2018.6.25; 『KBS』, 2018.6.19; 『서울신문』, 2018.7.3.

22) 『제주의소리』, 2018.6.28, 2018.6.29; 『제민일보』, 2018.7.13.

23) 『세계일보』, 2018.9.15; 『경향신문』, 2018.9.14, 2018.10.17; 『BBC코리아』, 2018.10.17.

24) 『BBC코리아』, 2018.10.17; 『경향신문』, 2018.10.17; 『세계일보』, 2018.10.18.

25) 예를 들어 “67만원 든 지갑 되찾아준 제주 예멘 난민” 기사는 “분실물을 찾아주

여기서는 한국을 ‘문명화’된 나라로, 예멘으로 대표되는 출신 국가들이 인권과 법질서의 저지대에 있는 ‘낙후된’ 나라로 만드는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었다(김나미, 2018: 3). 난민 신청자의 권한을 확대한 것처럼 서술된 이 조치는 사실상 안전과 존재론적 불안정성에 관한 우려에서 범죄, 혼란, 무질서를 없앨 해결책으로 국가가 일정한 주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통제권의 재확인에 가까웠다(바우만, 2008: 110).

‘난민 신청자’와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게 부여되는 권한에 이 ‘출도 허가’ 외의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실질적으로 세 번까지 가능한 난민 심사 재심 청구 시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도 2~5년까지 체류할 수 있었으며, 난민 신청 6개월 후에 가능했던 취업 허가 역시 2018년 제주도에서 제한 없이 승인하기로 된 바 있었다. 유엔난민기구에서 역시 난민 인정 비율과 인도적 체류 허가 비율을 모두 합쳐 ‘난민 보호율’로 집계했다. 그러나 ‘난민 인정’ 조치와 ‘인도적 체류 허가’ 조치가 실제 삶에서 만들어내는 차이는 컸다. 인도적 체류 허가 조치에서는 건강보험 및 기초생활 보장, 직업훈련 등 사회보장 혜택이 없었고, ‘가족 결합’도 불가능했다. 결국 ‘자발적 생존의 자유’를 공간적으로 확장하는 데 불과했던 이 ‘인도적 체류 허가’ 조치는 인도적으로 ‘살게 내버려 두기’로 가장된 ‘죽게 내버려 두지 않기’인 불구화에 가까웠던 것으로, 주권의 영역에서 죽일 권리일 뿐 아니라 불구로 만들 권리가 행사된 결과와 다를 바가 없었다(푸아, 2016b: 262).²⁶⁾

한정된 영역을 허가하는 동시에 일정한 통제가 지속해서 존재한다는 점을 서술하는 이 방식은 공포감을 잠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여론의 외피를 쓰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에 등장한 ‘소재 불명’의 난민을 두렵고 문체

는 등 선행만 네 건”이라는 내용을 다루는 동시에 “전 재산은 8만원이 전부”라는 점과 “여론은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 이어 “한국에서 법질서를 어기면 큰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점 역시 부연 설명한다(『한겨레신문』, 2018.6.28).

26) 『연합뉴스』, 2015.9.13; 『조선일보』, 2018.6.23; 『JTBC』, 2018.10.18.

가 있는 것으로 계속해서 지시하며 이를 유통했다.²⁷⁾ 체류지 보고 등을 통해 통제되어야 할 ‘무슬림 남성’으로 재현된 집단의 수적 증가와 지리적 이동에 대한 서술은 법의 보호를 받는 것에서는 제외되었지만, 법의 가장 심한 제재와 처벌을 받는 것에서 제외되지 않는 희생양이 된 집단을 향한 절차들을 정당화하는 효과를 발휘했다(김나미, 2018: 3).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또 다른 집단이 이 집단이 만들어낼 것이라 상상된 위협의 영향권에 놓인, 이 집단의 대립 항으로 구성되었다.

3) 상상된 불안과 혐오의 ‘확률’

그렇다면 난민의 입도를 두고 처음부터 여성의 불안이 문제시되었던 것인가? 난민에 의한 범죄 위협에 대한 보도는 언제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는가?

이전까지 브로커를 통한 불법 입국에 중점을 두었던 난민 관련 범죄 보도는 2018년 6월 초, 그 방향을 바꾼다. 여성을 잠재적 피해자로 난민을 잠재적 위협 유발자로 간주하면서, 성범죄의 위협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밤길 무서워요”라는 한 30대 여성의 인터뷰로 시작되는 한 기사는 ‘불법 난민’이 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이 성범죄의 위협이 무사증 제도에 따른 문제이며, 제도 개선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서술한다.²⁸⁾

6월 12일 1차로 올라와 20여만 명의 서명을 받은 후 혐오 표현이 문제가 되어 삭제된 청와대 국민청원을 살펴보자. 이 청원에는 “이슬람 사람들은 여자를 사람으로도 보지 않고 애 낳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테러 위협 국가” 등의 표현이 생경하게 담겨있다.²⁹⁾ 도민들의 안전, 우리 국민의

27) 『경향신문』, 2018.9.16; 『세계일보』, 2018.9.15, 2018.10.18.

28) 『세계일보』, 2018.6.2. “‘무사증’ 국제자유도시 제주, ‘국제범죄도시’ 될라”.

29) Dmitry(2018), “청와대에서 국민청원에서 삭제한 난민반대 청원 개요.jpg”

안전은 난민 수용과 대립하는 것으로 구성되며, 여기서 가장 큰 위협으로 여성의 인권을 위협하는 성범죄가 제시된다. 난민 반대 집회를 다루는 언론은 여성들을 집회의 대표자로 재현한다(〈그림 3〉 참고).

〈그림 3〉 '난민 반대' 집회를 담은 장면들



자료: 『경향신문』, 2018.9.16; 『KBS』, 2018.8.1.

실체를 가진 공포는 쉬운 전염성을 띠었다. 여성의 입을 통해 성범죄의 이야기를 난민에 부착시키는 방식은 '미투' 운동의 전개와 함께 '어디에나 있는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강화된 2018년, 이 공포를 실재하는 것으로 인지시키는 가장 쉬운 전략이었다. 높아진 국가의 위상을 강조하며 이에 걸맞은 포용과 관용의 태도를 갖출 것을 강조하는 서사는 현실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충분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진단과 함께 공감을 얻는 데 실패한다. 사실상 유입된 난민신청자의 숫자는 전체 인구대비 매우 미미한 수에 불과한 증가 폭을 만들어냈지만, 이미 거대하고 위협한 괴물이 되어 간 예멘인 집단의 표상은 충분한 위협으로 전파되었다. 2015~16년 새해에 발생한 독일 쾰른 중앙역의 집단 성범죄와 '타하루시'에 대한 얘기, 난민 캠프에서 봉사하다 성폭행 후 살해당한 10대 여성의 이야기 등이 대표적인 근거로 활용되어 퍼져나갔다.³⁰⁾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직/간접적 성폭력 경험을 통해 미리 신체에 새겨진 공포를 강력히 자극하며 실체를 띤 것으

30) Zeit Magazin, 2016: 『중앙일보』, 2016.12.5; Youtube(2017), “[미스터리범죄] 그들만의 위험한 일탈, 무슬림의 강간게임 '타하루시'(억압받는 여성인권과 범죄 사건)”, 2017.5.20.

로 흡수되었다. 발생 가능한 성범죄에 대한 공포를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예멘인이라는 대상의 설정은 초반에는 과도한 일반화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난민 반대 여론이 높아지며 유사한 생각을 가진 이들 사이에서의 연대성을 획득해나갔고(윌드론, 2017: 209), 전염된 남의 아이디어는 다수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으며 점차 제도화된 아이디어로 수정되었다(박길성 외, 2017: 78, 130). 이러한 상황에서 난민을 향해 내려진 통제 조치들은 객관적으로 부정확하다고 판명되고 실제적 위협이 없었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여전히 올바른 조치로 작동했다. 아무런 실제 지시대상이 없는 위협을 대상으로 삼는 권력의 한 양식이 발휘되며, 안전을 표방한 이 조치들은 경보 메커니즘을 통하여 그것의 가정적 결정을 객관적 상황 위에도 덮어씌울 수 있었다(마수미, 2010: 109-111). 난민의 수적 증가와 이동이 잠재적 성범죄자의 증가와 위협의 접촉 가능성 증가로 치환되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더 불리한 처지에 놓인 것 같다는 상상 역시 실제 확률보다 더 큰 힘을 발휘했다.

실제 위협에 상상이 덧붙여지며 만들어진 불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발견된 또 다른 문제는 이 불안을 판단하는 방식에 있었다. 이 불안은 곧바로 “남성 대다수…잠재적 범죄자?”라는 “근거 없는 혐오와 감정에 기댄 선입견”이자 “말이 안 되는 소리”였으며, “무방비로 퍼지는 가짜 정보”, “조작된 것”, “성범죄 공포를 부추기는 소문”이 부추긴 것으로 규정되었다.³¹⁾ 일부 여성주의 활동가나 맘 카페 회원들이 이 발언의 발화자로 지시되었으며, 난민과 관련된 발언들이 “여성 가입자가 많은 페미니즘 카페나 맘 카페에서 가장 활발히 유통”되며 한국의 페미니즘이 이런 공포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³²⁾ ‘일부’라는 표현은 집단 전반에 대한 일

31) 『세계일보』, 2018.6.2; 『경향신문』, 2018.6.19; 『중앙일보』, 2018.6.20; 『한국일보』, 2018.7.2; 『한겨레신문』, 2018.7.2; 『서울신문』, 2018.7.3; 『세계일보』, 2018.7.5.

32) 『한겨레신문』, 2018.6.24; 『조선일보』, 2018.7.3.

반화라는 비판을 피해 가면서도, 그 일부가 집단 내에 존재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전략으로 활용되었다. 일부라는 수식어를 단 집단 명명의 방식을 통해 이 집단이 향해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 원래 존재할 것이라는 인식과 동시에 현재 집단 내에 전염성을 가진 위험 요소가 있다는 점 역시 강조되었다. “페미니즘은 원래 ‘소수자’에 대해 관용적인 입장이지만, 한국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는 분석(『조선일보』, 2018.7.3), “여성주의 역사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혐오하는 일을 벌인 적은 없다”며 “약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선택한 미러링이 또 다른 약자에 대한 혐오와 억압으로 진행”되는 것이 극단적이고, 폭력적이라는 분석 역시 첨언 되었다(『경향신문』, 2018.7.26). 여성주의자나 맘 카페에서 불안을 토로한다는 서술은 우선 안전을 촉구하는 집단의 표상을 여성과 어머니에 부착하며, 난민 신청자를 위협의 위치에 배치했다. 그리고 다시 이 불안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으며, 일부 가짜 정보에 근거한 것이라는 설명을 통해 이 집단의 비이성적 속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한국이 불안을 유발하는 객관적 지표인 실제 강도·위해 경험률 등이 양호한데도, 상대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진단과 함께 정제되지 않은 SNS와 인터넷 정보가 범죄 피해의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기사와 연구보고서 역시 등장했다(우선회, 2018: 67; 『서울신문』, 2018.8.5).

그러나 통계 결과가 두려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상상을 교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혐오는 두려움과 직접적인 연결을 지니고 있었다(이용승, 2018: 175). 혐오 혹은 불안이 일정 부분 사회적으로 승인되어 가며 유통되며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여성과 무슬림 집단에 부착된 가해와 피해의 이미지는 가해와 가해의 대결, 그리고 피해와 피해의 대결로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현존하는 위협과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위협

은 그 집단 간 경합의 근거가 되었다.

한 숙박업소에서 만난 예멘인 난민신청자(34)는 “우리가 성범죄 등을 저지르지 모른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 잘 안다”며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쳐 온 사람이 아니며 오히려 이 유 없이 한국 사람들에게 폭행당하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말했다(『서울신문』, 2018.7.3).

제주도에 온 예멘 출신 난민들에 대한 동시대인들의 혐오 감정 표현에 나는 격심한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때로 쳐들어온 성폭력 범죄 집단으로 비치기까지 했다. 독일처럼 한 해에 8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이 밀려들어 오는 것도 아니고, 오스트리아처럼 내국인 출생자 수보다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인원 수가 더 많다는 이유로 극우 정치 세력에게 ‘정체성 공포’의 빌미를 주는 정도가 아닌 고작 500여 명... 젠더 폭력의 오랜 피해자인 여성들 대부분이 더 약한 소수자인 난민들에게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더 공격적인 혐오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닐까(『한겨레신문』, 2018.7.5).

위협적인 소수의 존재와 그 소수가 속한 집단을 등장시키는 확률의 상상은 예멘 난민 집단에 대한 혐오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도, 여성 집단을 문제시하는 방식에서도 그 효과를 발휘했다. 상상된 ‘불안’의 확률을 토대로 대립 향으로 구성되어 간 집단 모두에 가해의 혐의가 부착되면서 각 집단에 요구되는 규범의 힘은 더욱 강화되었지만, 각 집단이 제기한 불안은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았다.

4. ‘가짜’가 되어 밀려난 불안: 닫힌 국경과 떠다니는 성범죄의 책임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 공포’가 일부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은 특정한 사실에 근거를 둔 승인될 수 있는 불안이 존재하며, 이 합리적 불안에만 적절한 안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인식을 만들었다. 억압받는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불안의 거짓 속성을 제거해야 할 필요 역시 등장했다(Hodgkin and Radstone, 2003: 4-5).

불안의 합리성을 증명해내야 한다는 논의는 가짜 난민과 진짜 난민의 프레임을 소환하는 방식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 방식이었다. 2018년도에 발의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과 난민법 폐지법률안 1건은³³⁾ 난민법이 악용되어 불법체류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 난민법을 개정 혹은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국민참여입법센터, 2018). 이 법안들에서는 브로커의 개입,³⁴⁾ 거짓 서류,³⁵⁾ 난민법 혹은 난민 제도 악용³⁶⁾ 등의 표현과 함께 ‘가짜 난민’을 색출해내며, 이들의 입국과 체류 권한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난민 신청자의 체류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동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대한 논의는 확장되지 않았다. 국제 난민기구 IRO 현장은 본디 주관적인 공포와 객관적인 박해 상황을 모두 포괄하는 난민 정책을 요구하기 위해 “이미 경험한 박해와 장래 박해의 위

33) 의안 번호 2014365, 조경대 의원 등 11인(2018년 7월 12일 발의).

34) 의안 번호 2014542, 함진규 의원 등 10인(2018년 7월 25일 발의); 의안 번호 2014503, 송석준 의원 등 11인(2018년 7월 20일 발의).

35) 의안 번호 2014503, 송석준 의원 등 11인(2018년 7월 20일 발의); 의안 번호 2014483, 이연주 의원 등 10인(2018년 7월 18일 발의).

36) 의안 번호 2014542, 함진규 의원 등 10인(2018년 7월 25일 발의); 의안 번호 2014496, 김진태 의원 등 16인(2018년 7월 19일 발의); 의안 번호 2014410, 강석호 의원 등 11인(2018년 7월 13일 발의); 의안 번호 2014145, 권철승 의원 등 10인(2018년 6월 29일 발의).

힘을 각각 ‘박해(persecution)’와 ‘공포(fear)’³⁷⁾로 서술하며 두 개념 모두를 정의했다(정인섭·황필규, 2011: 64-83). 하지만 난민이 또 다른 공포를 유발하는 집단으로 구성되면서 난민신청자를 선량한 존재로 인증해줄수록 더욱 강력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증명해야 할 필요성 역시 높아졌다. 문제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제시되어야 할 ‘이미 경험한’ 경험은 “언제나 이미 하나의 해석인 동시에 해석의 필요가 있는, 언제나 논쟁적이며, 따라서 언제나 정치적인” 것이었다. 때문에 이 공포의 증명은 장소와 청자, 인정에의 목적을 위해 더 극적이며 진실성을 띤 트라우마와 불안을 만들어내는 서사로 흐르는 경향을 보였다(Scott, 1992: 37). 공포를 증명해내지 못한 ‘가짜 난민’과 ‘불법 난민’의 지위가 논의되는 사이,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과 난민법 개정 발의안은 추방을 그 해결법으로 제시했다.³⁷⁾ ‘진짜 공포’와 ‘막연한 불안’ 즉, ‘가짜 공포’가 존재한다는 믿음이 가짜나 진짜나 진실 공방으로 문제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이 공방에서 밀려난 존재들에게 추방될 것을 지시하고, 이 추방을 정당화하는 효과가 발휘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 시기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안전 확보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3월 ‘미투’ 운동의 시작과 함께 각종 여성 대상 폭력 범죄에 대한 논의가 힘을 얻어가는 가운데,³⁸⁾ 성범죄 관련 무고죄를 적용하라는

37) 난민의 기본적 인권은 당연히 보호하겠으나, 이들이 우리의 법질서, 문화, 가치 등을 훼손하거나 위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국외로 추방하거나 난민 인정 취소나 철회, 체류 상 불이익을 주고 본국으로 강제송환할 수 있도록 난민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견해를 밝힌다. “청와대 국민청원(2018a),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2018.6.13. ~2018.7.13.)”에 따른 2018년 8월 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답변 중).

38)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전후한 5월부터 7월까지 여성과 공포를 다룬 기사가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5월 68건, 6월 103건, 7월 118건 이후 잠시 주춤했다가 10월 다시 123건이 발견되었다. ‘난민대책국민행동’ 카페 개설과 난민법 개정 국민 청원 역시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다(난민대책국민행동,

헌법소원과 대검찰청의 수사 매뉴얼 개정에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하라는 청원이 6월 말부터 7월까지 활발하게 등장했다.³⁹⁾ 난민에 대한 막연한 공포에 기반을 둔 혐오 발언을 생산하는 집단으로 여성 집단을 지시하는 방식의 기사 역시 이 시기 등장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위협과 성범죄의 위협이 높아지기에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을 구별해야 한다는 서사와 여성과 난민이라는 기호에 부착되어 퍼져나간 불안이 정당하지 않은 근거에서 비롯된 혐오 발언이라는 지적, 그리고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무고의 논의 과정들은 모두 특정 집단이 특정 집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형태의 위협 서사로 번역되었다.⁴⁰⁾

불안의 인정 범위를 보다 넓혀나갈 필요가 있었던 여성과 난민 두 집단은 모두 이 논의를 거쳐 위협이 되는 집단의 이미지를 획득했다. 그리고 논의의 끝에 남은 것은 안전 확보를 위해 불안의 합리성을 검증하며 가짜 불안 혹은 가짜 불안을 느끼는 자를 식별해내야 한다는 인식의 강화였다. 소규모 개인 미디어 및 언론의 증가 등 미디어의 분화는 정보의 생산 조건을 예전보다 쉬운 것으로 만들어냈고, 여론이라는 이름하에 진짜/가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근거의 경합도 활발해졌다. 카카오톡, CCTV 등 시각화된 증거들로 여론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도 계속해서 등장했다.⁴¹⁾ 검증

2018). 2018년 7월 7일 혜화역 인근에서 열린 '제3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에는 주최 측 추산 6만여 명, 경찰 추산 1만7천여 명이 참여했다(『서울경제』, 2018.7.8).

39) 청와대 국민청원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 매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는 2018년 5월 28일부터 2018년 6월 27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217,143명이 참여했다(청와대 국민청원, 2018b). 7월 19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답변했다. 이와 관련, '유튜버 성추행 사건'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스튜디오 실장 A 씨는 5월 30일 무고를 이유로 맞고소를 진행하는 동시에 헌법소원을 제출한 바 있으며, 7월 9일 투신했다(『SBS』, 2018.4.11; 『동아일보』, 2018.7.9).

40) 10월 말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하라는 집회를 연 '당당위'의 풀네임은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다(『동아일보』, 2018.10.29).

이 일상화되며 일상적 감시자의 숫자는 늘어났고, 여론을 통한 2차 피해의 발생 가능성 역시 커졌다.

이 흐름은 다시 난민법 개정, 맞고소, 처벌과 추방 등 법질서의 소환으로 이어졌다.⁴²⁾ 법 제도에 대한 호출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과정에서 법 규범은 실제 발휘된 효력 이상으로 일상에서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사회 정의를 형사 정의와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이 주장은(Bernstein, 2010: 57-61), 국가적 차원에서 이 불안을 승인해줄 것과 그리고 적절한 더 강한 제재를 수행해나갈 것을 요청했다(버틀러, 2016: 183-187).

그러나 문제는 가해자 처벌이 강조되며 보호해야 할 피해자에 대한 선별과 검열 역시 강화된다는 것이었다. 성폭력을 불평등한 젠더 관계 혹은 그 '행위'보다는 위험인자를 가진 '존재'의 문제로 부각하면서 그들에 대한 관리와 사회적 격리가 강조되고, 어떤 관계 속에서 발현되는지보다는 어떤 '자'에 의해, 어떤 '기회'를 통해 발생하는지에 집중하면서 존재를 선별하는 작업에 그 초점이 맞춰진 결과였다(추지현, 2014: 66-67, 70). 특정한 인간의 형상에 초점을 맞추며 '괴물', '사이코패스', '정신질환자'의 문제로 치환된 범죄에 대한 논의가 한편으로는 선량한 시민으로서의 '우리'와 타인을 구별 짓는 구도를 강화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김민정, 2017: 51). 선량하고 진실한 공포를 판단하는 기준을 만들어내고, 승인된 범위의 공포를 말

41) 5월 시작된 '유튜버 성추행 사건', 9월 제기된 '곰탕집 성추행 사건', 11월 불거진 '이수영 폭행 사건'에서는 카카오톡 채팅 내역,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CCTV와 현장 촬영 동영상 등이 등장했다.

42) 추지현(2014)은 "일상적 불안과 긴장을 공공의 적에게 투사하는 대중 담론과 그것을 주조하는 구체적인 행위자들의 역할에 주목하는 연구들"로 겔런드의 연구를 인용, "1970년대 시장 주도 사회를 지지해 온 복지 전문가들이 범죄 통제에 대한 '도덕적 공황'을 생산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결과로 엄벌주의"가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이 집단들이 범죄에 대한 응보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부적절한 감정을 표출하는 데 일조했다는 것"이다(Garland, 2002; 추지현, 2014: 49에서 재인용)

하는 각 표상에만 선별적으로 특정 지위를 부여하는 그 선별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소거되었다. 남은 것은 더 강력한 기준을 제시하게 된 인정과 선별 체계, 그리고 그 체계에서 승인받지 못하고 밀려난 집단에 부착된 위협의 이미지였다.

5. 맺으며

2018년 ‘예멘 난민’의 제주도 유입과 ‘미투 운동’은 기존의 평화를 흔드는 것으로 간주되는 질문들을 제기한 주요 화두가 되었다. 3월, 한 대상을 지칭하며 시작된 ‘미투’는 분야를 막론하여 발생하는 성폭력과 이를 둘러싼 위력을 논하는 장으로 이어졌고, ‘기타’의 범주에 있던 소수의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의 가시화는 난민을 둘러싼 논쟁의 장을 열어나갔다.

본 연구는 2018년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들의 등장 소식과 함께 공론화된 성범죄에 대한 불안에 주목하며, 불안의 개념이 특정 집단과 부착되고 분리되는 과정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와 그 서사가 겨냥하는 효과와 소거되는 논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역사 외부의 관행들에 고정된 문화로서, 단일한 공동체인양 정의되는 동질적 개념화를 통해 난민의 표상들을 그려나가는 과정은(푸아, 2016a: 95; Scott, 2007: 73), 현재의 한국이 규정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난민 집단의 경계는 수적 팽창, 이동, 전염성에 대한 묘사가 부착된 위협 서사를 통해 구성되었으며, 불안의 행위자와 수신자의 영향권에 놓이는 것으로 상상되는 참여자를 소환해내는 방식으로 설파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국가는 과거와 섬-육지라는 시간과 공간을 가로지르며, 때로는 외부자를 환대하는 인권 국가가 되었고, 외부자의 침투 이전에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질서 잡힌 공간인 것으로 그려졌다. 동시에 외부자를 통해 점진

적 위협이 전염될 수 있는 장소이자 외부자에게 모범적 규범을 제시할 어떤 기준인 것으로 그려졌다. 인도적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한정된 영역만을 허용하는 동시에 일정한 통제를 지속해나간 일련의 사법 조치들은 이 표상이 부착된 대상의 경계를 강화해나갔다. 무시중 입국 제도의 제한과 난민 불인정, 난민법 개정을 주장하며 유통된 난민에 의한 범죄의 위험 서사는 여성을 난민과 대립하는 집단으로 호출해내면서 그 정당성을 획득해나갔다. 그 결과,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외연을 확장하지 않은 채,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 체류 허가를 내어주는 것으로도 난민을 받아들이는 인권 국가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한국의 난민 대상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난민 집단과 대립하는 집단으로 여성 집단이 호출되었지만, 이 대립 구도가 여성 집단의 공포 인정 범위를 확장해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때 호출된 여성 집단은 이후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무고죄 논의가 등장하면서 근거 없는 공포에 기반을 둔 혐오 발언 유통을 주도하는 집단으로 지적되었다. 합리적 공포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일부를 식별해낼 필요를 강조하는 방식은 여기서도 발휘되었다. 이 집단이 향해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 원래 존재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현재 집단 내에 전염성을 가진 일부의 위험 요소가 있다는 점이 부각된 것이다. 난민이라는 외부자를 두고 '가짜 난민'과 '진짜 난민'을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방식의 서사가 호출해낸 '국민'은 모두에 의한 모두의 감시 필요성을 소환했으며, 이는 성폭력을 둘러싼 논의에서 역시 '가짜 불안'과 '진짜 불안'을 식별하며 불안의 합리성을 검증해내고자 시도하는 다수의 일상적 통제로도 이어졌다. 그리고 이 '비합리적 불안'을 '혐오'로 명명하는 과정에서 이 불안을 만들어낸 원인과 해결방안들에 대한 논의는 사라졌다.

논의의 방향을 진짜와 가짜의 검증 프레임으로 전환하며 만들어내는 효과는 이후 법적 판단 영역에서의 박탈과 추방 방식으로 다시 이어졌다. 예

멘인의 무시증 입도가 제한되어 더 이상의 추가 입국이 없는 상황에서 거의 최종적으로 내려진 판단일 것으로 보이는 12월 14일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후 출도가 제한된 예멘 난민신청자 484명에 대한 심사 결과 난민 인정 2명, 인도적 체류 허가 412명, 단순 불인정 56명, 직권 종료 1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결국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 484명 중 난민 인정자의 비율은 '0.41%'에 불과했다(『한겨레신문』, 2018.12.14).⁴³⁾ 그리고 가짜 불안과 진짜 불안의 구도로 고발된 대상에 대한 논의보다 고발한 자에 대한 검증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미투'는 해당 문제 해결을 지속해서 요구할 자격의 논의로 이어지며, 다수의 2차 피해를 만들어냈고, 연말을 기해 많은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게 했다.

집단과 집단의 대립으로 상상되는 이 과정에 공포와 불안이 혼재되어 부착되면서 각 정책은 손쉽게 논의의 방향을 전환하며 정당성을 획득해나갔다. 집단의 경계와 함께 '가해'와 '피해'가 부착되어 오가는 과정은 언젠가 평화를 위협하는 특정 위험 집단을 상징할 수 있는 성질의 서사를 만들어냈다. 더 큰 불안, 더 확실한 피해를 향해 경합하는 이 방식은 더 큰 합리적 불안을 증명해내는 특정 소수자 집단만을 필요에 따라 허용하고 승인하는 과정으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불안의 폭넓은 인정을 두고 제기되어야 할 질문들은 특정 집단의 경계선에 부착된 채 다시 그 집단의 안으로 반복적으로 포섭되면서 점차 열어져 갔다.

참고문헌

권지윤(2018), “한국 내 예멘 난민 이슈에 대한 이해”, 『Muslim-Christian Encounter』, 제11권 2호, 81-112쪽.

43) 입국 1년을 맞이한 현재 역시 난민 인정자의 수는 2명이다(『YTN』, 2019.4.22).

- 김나미(2018), “‘여성 인권’의 이름으로 맺는 ‘위험한 연대’”, 『제3시대』, 제134호, 2-5쪽.
- 김민정(2017), “‘묻지마 범죄’가 묻지 않은 것”, 『한국여성학』, 제33권 3호, 33-65쪽.
- 김보명(2018), “혐오의 정동경제학과 페미니스트 저항”, 『한국여성학』, 제34권 1호, 1-31쪽.
- 김성진(2018), “난민을 만나며”, 『현상과인식』, 제42권 3호, 193-197쪽.
- 김희강(2016), “난민 정책: 난민은 보호받아야 하는가?”, 『규범적 정책분석』, 서울: 박영사, 173-197쪽.
- 마수미, 브라이언(2010), “정동적 사실의 미래적 탄생: 위협의 정치적 존재론”, 『정동 이론』, 최성희 외 옮김, 서울: 갈무리, 96-122쪽, Gregg, M. and G. Seigworth(eds.)(2010), *The Affect Theory Reader*,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pp. 52-70.
- 바우만, 지그문트(2008), 『쓰레기가 되는 삶들: 모더니티와 그 추방자들』, 정일준 옮김, 서울: 새물결, Bauman, Z.(2004), *Wasted Lives: Modernity and Its Outcasts*, Oxford: Blackwell Publishing.
- 박길성·김우주·김성도 외(2017), 『전염의 상상력』, 서울: 나남.
- 버틀러, 주디스(2016), 『혐오 발언』, 유민석 옮김, 서울: 알렘, Butler, J.(1997), *Excitable Speech: A Politics of the Performative*, New York: Routledge.
- 브라운, 웬디(2010), 『관용 - 다문화제국의 새로운 통치전략』, 이승철 옮김, 서울: 갈무리, Brown, W.(2006), *Regulating Aversion: Tolerance in the Age of Identity and Empir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오혜민(2019), “‘어글리 코리아’의 마주침 사건과 타자의 형상들”, 『기억과전망』, 제40호, 9-58쪽.
- 우선희(2018), “범죄 피해 불안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유럽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제261권, 66-80쪽.
- 월드론, 제레미(2017),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악이 되는가?』, 홍성수·

- 이소영 옮김, 고양: 이후, Waldron, J.(2012), *The Harm in Hate Speech*,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이용승(2018), “난민은 누구이고,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민족연구』, 제72권, 166-183쪽.
- 임종섭(2018), “동일한 문제를 다르게…한국 언론의 난민 보도”, 『관훈저널』, 제148호, 33-40쪽.
- 전의령(2015), “선량한 이주민, 불량한 이주민: 한국의 주류 이주 다문화 담론과 반다문화 담론”, 『경제와사회』, 제106호, 238-270쪽.
- 정인섭·황필규(2011),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 서울: 경인문화사.
- 추지현(2014), ““성폭력을 엄벌하다”: 2000년대 성폭력 정책 담론의 구조와 효과”, 『한국여성학』, 제30권 4호, 45-84쪽.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8a), 「2017년 난민관련통계(출입국향, 난민신청 현황 등)」, 과천: 난민과(2018.5.9).
- _____ (2018b), 「2018년 4월호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과천: 이민정보과(2018.5.16).
- _____ (2018c), 「2018년 5월호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과천: 이민정보과(2018.6.19).
- _____ (2018d), 「제주 예멘 난민심사결과 1차 발표 관련 Q&A」, 제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2018.9.14).
- _____ (2018e), 「예멘, 제주도 무사증입국불허 국가지정 관련」, 과천: 출입국심사과(2018.5.31).
- 푸아, 재스비어 K.(2016a), “퀴어한 시간들, 퀴어한 배치들”, 『문학과사회』, 제29권 4호, 88-118쪽, Puar, K.(2005), “Queer Times, Queer Assemblages”, *Social Text*, 23, pp. 84-85.
- _____ (2016b), “불구화할 ‘권리’ - 팔레스타인에서의 무력화(Disablement)와 비인도적 생명 정치”, 『오늘의 문예비평』, 제102호, 248-282쪽, Puar, K.(2015), “The ‘Right’ to Maim: Disablement and Inhumanist Biopolitics in Palestine”, *Borderlands*, 14(1), e-journal.

- 콜린스, 패트리샤 힐(2009), 『흑인 페미니즘 사상』, 박미선·주혜연 옮김, 서울: 여이연, Collins, P. H.(1990), *Black Feminist Thought*, New York: Routledge.
- Bernstein, E.(2010), "Militarized Humanitarianism Meets Carceral Feminism: The Politics of Sex, Rights, and Freedom in Contemporary Anti-trafficking Campaigns", *Signs*, 36(1), pp. 45-71.
- Garland, D.(2002), *Culture of Control*, Loudon: Oxford University Press.
- Hodgkin, K. and S. Radstone(2003), *Contested Pasts: The Politics of Memory*, London: Routledge.
- Kim, N.(2016), *The Gendered Politics of the Korean Protestant Right: Hegemonic Masculinity*, Cham: Palgrave Macmillan.
- Scheufele, D. A.(1999), "Framing as a Theory of Media Effects", *Journal of Communication*, 49(1), pp. 103-122.
- Scott, J. W.(1992), "Experience", in *Feminists Theorize the Political*, New York: Routledge, pp. 22-40.
- _____ (2007), *The Politics of the Veil*,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언론기사〉

- 『경향신문』, 2017.11.22, "[난민, 길을 묻다 - 로힝야 난민촌 르포] (1) '시민이 되고 싶다'".
- _____, 2017.11.28, "'난민 기각' 나이지리아인, 한국 비자 발급받아 아내와 쌍둥이 만난다".
- _____, 2018.3.20, "[속보] 청와대, 기본권 국민주권 개헌안 요지 발표".
- _____, 2018.6.6, "올해만 500여명이 신청, 제주 '예멘 난민' 탈레마".
- _____, 2018.6.19, "젊은 무슬림, 잠재적 범죄자 취급...근거 없는 '예멘 난민 혐오'".
- _____, 2018.7.26, "[분노와 혐오 사이] 워마드의 전략 '미러링', 충격요

- 법이러지만... '극단·폭력적' 역풍 부른 소수자 혐오".
_____, 2018.9.14, "제주 난민신청 예멘인 23명, 인도적 체류 허가".
_____, 2018.9.16, "'문제는 난민 혐오, 거짓주장·선동 중단해야'.
_____, 2018.10.17, "[예멘 난민] 예멘인 339명, 한국에 남는다 '체류 허가' 제주 밖 이동 가능".
『동아일보』, 2018.1.14, "성화봉송 나선 네 명의 이주민들...30년 만에 다시 서울을 환하게 밝히다".
_____, 2018.1.15, "30년 만에 서울 밝힌 성화... 난민소녀도 '화합의 불꽃'들다".
_____, 2018.7.9, "'양예원 사건' 스튜디오 실장, 무고 맞고소→헌법소원→북한강 투신".
_____, 2018.10.29, "국내 첫 '힘투' 집회...길 건너선 '미투' 집회".
『문화일보』, 2018.6.29, "<10문10답 뉴스 깊이보기> 제주 사태로 불붙은 '난민 논쟁'".
『서울경제』, 2018.7.8, "정현백 장관 '혜화역 시위 생생한 목소리 잊지 않을 것' 구설... '문제인 재기해' 구호도?".
『서울신문』, 2018.5.3, "제주도에 예멘인 북적북적한 이유 알아보니 '난민 신청자 급증'".
_____, 2018.7.3, "예멘 난민 위협?... 범죄 신고는 '0'".
_____, 2018.7.6, "[제주 난민 희망과 절망] 불안감 자연스럽지만 '혐오의 시선' 해결에 아무 도움 안 돼".
_____, 2018.8.5, "'밤길 불안감' 유럽보다 높다... 실제 범죄는 '최하위'".
『세계일보』, 2018.1.29, "합법적 장기체류 약속... '평화의 섬' 제주 난민에 몸살"
_____, 2018.6.2, "'무사증' 국제자유도시 제주, '국제범죄도시' 될라".
_____, 2018.7.5, "그들은 왜 예멘 난민 찬성하나... '인도주의 차원' '협정가입 국제적 책임'".
_____, 2018.9.14, "제주 체류 예멘인 23명 '인도적 체류허가'...난민 지우는 불허".

- _____, 2018.9.15, “‘인도적 체류허가’ 예멘인들… 제주도에서 육지로”.
- _____, 2018.10.17, “‘예멘 난민들 즉시 추방’…339명 체류허가 반대 목소리 봇물”.
- _____, 2018.10.18, “‘한명도 없더니, 당혹’ vs ‘당장 추방을’…예멘 난민 심사 갈라진 민심”.
- _____, 2019.6.20, “1년 전 제주 온 예멘인들은 지금?”.
- 『연합뉴스』, 2015.9.13, “‘인도적 체류자’도 권리보장 인색…난민과 ‘천양지차’”.
- _____, 2018.1.12, “미안마 난민소녀 서울서 성화봉송…‘행복 기원’ 답아 달릴래요”.
- _____, 2018.5.9, “제주서 내전 겪는 중동 예멘인 4개월 만에 227명 난민 신청”.
- _____, 2018.5.28, “성폭력 수사 끝날 때까지 ‘피의자 맞고소’ 수사 안 한다”.
- 『제민일보』, 2018.7.13, “난민문제, 인권·도민 안전 측면서 접근”.
- 『제주신보』, 2018.5.2, “중동출신 예멘인 78명 제주에 왜 왔나?”.
- 『제주의소리』, 2018.5.3, “중동 예멘인 76명 집단 제주행 ‘난민신청 여부 촉각’”.
- _____, 2018.6.20, “‘가짜 난민 가려내야’ 제주서 ‘난민법 개정’ 목소리”.
- _____, 2018.6.25, “살기 위해 온 제주에서 다시 표류하는 예멘인들”.
- _____, 2018.6.28, “예멘인 난민심사 인력 충원되나? 29일 법무부에 공식건의”.
- _____, 2018.6.29, “법무부, 제주 예멘난민 심사 2~3개월로 앞당긴다”.
- 『조선일보』, 2018.2.10, “서울, 평창… 대한민국의 두 번째 불꽃 타오르다”.
- _____, 2018.6.18, “‘예멘 난민’ 올해만 500여명…화들짝 놀린 제주 무비자 입국 활용해 대거 입국…수용 놓고 지역사회 곳곳 갈등.”
- _____, 2018.6.20, “월 생계비 138만원? 예멘 난민에 대한 오해와 진실”.
- _____, 2018.6.23, “난민신청 상반기에만 7737명…1년새 2배 급증”.
- _____, 2018.7.3, “[난민쇼크] ②성범죄 위험 높다? 여성들 더 민감한 ‘난민 루머’”
- 『중앙일보』, 2016.12.5, “난민캠프서 봉사하다가 성폭행·살해당한 10대여성”.

_____, 2018.3.8, “‘지하철서 날 보며 원숭이 흉내’ 차별에 눈물 짓는 난민 아동들”.

_____, 2018.6.20, “[노트북을 열며] ‘평화의 섬’에 온 예멘 난민”.

_____, 2018.9.14,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 1년 기한 인도적 체류 결정”.

『한겨레신문』, 2017.9.1, “김혜수가 난민 어린이를 만나다”.

_____, 2018.6.17, “[영상] 제주 온 예멘 난민 560명… ‘수용이나 거부’냐 물음표를 던지다”.

_____, 2018.6.24, “누가 제주 예멘 난민에게 돌을 던지나”.

_____, 2018.6.28, “67만원 든 지갑 되찾아준 제주 예멘 난민”.

_____, 2018.7.2, “당신을 불안에 떨게 한 그 사진은 가짜뉴스다”.

_____, 2018.7.5, “[홍세화 칼럼] 이 혐오감정은 어디서 비롯됐을까?”.

_____, 2018.9.14, “제주 예멘인 23명 인도적 체류 허가… 난민 지위는 불인정”.

_____, 2018.12.14, “제주 예멘인 2명 난민 인정…484명 중 인정률 ‘0.41%’”.

『한국일보』, 2018.6.18, “‘예멘 난민’ 벌써 500명 넘어… 제주는 찬반논쟁 중”.

_____, 2018.6.20, “대한민국이 화들짝, 때 아닌 난민 혐오”.

_____, 2018.7.2, “‘난민 가짜뉴스’ 지적한 김어준 ‘갑자기 부정적 여론’ 형성된 것 이상”.

_____, 2018.9.14,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 ‘인도적 체류’ 허가”.

『BBC코리아』, 2018.10.17, “‘제주 예멘인’ 339명 인도적 체류허가 이태원 올 수 있게 됐다”.

『JTBC』, 2018.10.18, “인도적 체류 339명, 난민과 어떤 차이? 신분·지원 살펴보니”.

『KBS』, 2018.6.19, “제주로 몰려든 예멘 난민… 찬반 논란 가열”.

_____, 2018.8.1, “[추적 60분] 예멘 난민 한국에서 길을 잃다(1276화)”.

『SBS』, 2018.4.11, “[리포트+] 성범죄자 오명에 청와대 청원까지… 온라인

‘마녀사냥’ 이대로 괜찮나”.

『YTN』, 2019.4.22, “‘제주도 예멘 난민 이주 1년’ 지금 제주 난민들은?”.

〈인터넷 자료〉

난민대책 국민행동(2018), “카페 개설일”, <https://cafe.naver.com/refugeeout/>
(검색일: 2018.11.30).

국민참여입법센터(2018), “제20대 국회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sugCd=20&sgtCls=&cptOfiOrgCd=&searchStDtNew=&searchEdDtNew=&rslRsltNmL=&rslRsltNmR=&scCptPpostCmt=&scPpsUsr=&scBlNm=scBlNm__blNm&scBlNmSct=난민법 (검색일: 2019.12.24).

청와대 국민청원(2018a),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2018.6.13~2018.7.13)”,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9548> (검색일: 2018.10.30).

_____ (2018b),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2018.5.28~2018.6.27)”,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검색일: 2018.12.18).

Dmitory(2018), “청와대에서 국민청원에서 삭제한 난민반대 청원 개요.jpg”,
<https://www.dmitory.com/issue/26716450> (검색일: 2018.12.11).

Youtube(2017), “[미스테리범죄] 그들만의 위험한 일탈, 무슬림의 강간계임
‘타하루시’(억압받는 여성인권과 범죄사건) (조희수 206,827회, 게시
일: 2017.5.20)”, <https://www.youtube.com/watch?v=IAQ5ryHf42o>
(검색일: 2018.12.16).

Zeit Magazin(2016), Was geschah Wirklich, 2016, No.27, <https://www.zeit.de/zeit-magazin/2016/27/silvesternacht-koeln-fluechtlingsdebatte-aufklaerung> (검색일: 2018.11.30).

(논문 투고일: 2019.04.29, 심사 확정일: 2019.11.28, 게재 확정일: 2019.12.08)

〈Abstract〉

Well-Grounded Anxiety Becoming Hate:

A Focus on the Discourses of Recognizing Refugees' and
Women's Fear

Oh, Hye Min*

This study focuses on the anxiety concerning sex crimes revealed in media presentations of Yemenite asylum seekers in 2018. We examine the process of attaching and detaching the idea of ‘anxiety’ to a particular group. In the process of portraying refugees as a narrative of numerical expansion, movement, and transmission, Korea is depicted as a human rights state that welcomes and has welcomed outsiders across time and space. Korea has maintained its humanitarian status and has provided legitimacy for women as victims of anxiety by issuing temporary residence permits. Without exceeding reasonable grounds for fear, the public (‘gukmin’) is now verifying ‘fake’ (‘ga-jja’) and ‘real’ (‘jinjja’) refugees through routine controls that legitimate the rationality of anxiety in the discourses on sexual violence. Groups of women who have been pointed out as disseminating irrational fear in refugee discussions are required to provide evidence in the discussion of sexual violence.

Key words: refugees, hatred, anxiety, sexual violence, state

* Lecturer, School of Film, TV & Multimedia,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